

영등포구의회
제14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3. 2.



社會建設委員會

(專門委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김종태의원 외 4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2. 20.
- 제안자 : 김종태의원(외 4인)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 ·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대상사업의 범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함
(안 제4조 제1항 및 별표 1)

관련법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·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종로구, 구로구, 용산구, 양천구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조 제1항에 생활체육진흥대상사업 범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3. 2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 법령

관련법령

■ 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 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여가 체육의 육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경마와 경륜·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제18조 (여가체육의 육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가체육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레크리에이션의 지도·보급
2. 여가체육 관련단체의 육성·지원
3.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
4. 경마·경륜 및 경정의 건전운영지도
5. 기타 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